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5가단528592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7. 5. 19.

판결 선고 2017. 6.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687,400원 및 그 중 64,687,398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12%,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42,830,476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2,83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3. 10. 24.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보증원금 63,75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한은 2015. 10. 2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체결 당시, 피고 A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폐업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할 수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15. 3. 12.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572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6.11. 기업은행에게 보증원리금 64,695,8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419원을 회수하여 아직까지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4,687,398원이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A은 2015. 3. 11.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6040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64,687,400원(=미회수 64,687,398원 + 확정지연손해금 2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64,687,3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8.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같은 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청구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A과 2014. 10. 2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성립된 상태에서, 피고 A은 2015. 3. 11.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B에게 처분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2015. 3. 12. 피고 A이 2015. 3. 12.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5. 6. 11.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16. 6. 11. 위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취소범위는 아래에서 본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나) 갑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07. 1.24. 기업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공주지원 접수 제2002호로 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3. 11. 말소되었고, 2015. 3. 11.을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43,867,4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3,867,42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6. 6. 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가 86,697,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2,830,476원(= 86,697,900원 - 43,867,424원)이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1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83,436,108원(구상금 채권 64,687,398원 + 1,637,565원¹⁾ + 1,240,580원²⁾ + 15,870,565원³⁾)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2,830,476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2,83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철

별지

1) 2015. 6. 11.부터 2015. 8. 26.까지 연 12%(약정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64,687,398원 × 77일/365 × 12%) 로 계산한 금액 (=64,687,398원 × 35일/365 × 20%)
(=64,687,398원 × 597일/365 × 15%)

2) 2015. 8. 27.부터 2015. 10. 31.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되기 전의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64,687,398원 × 35일/365 × 20%)
(=64,687,398원 × 597일/365 × 15%)

3) 2015. 10. 1.부터 2017. 5. 19.까지 연 15%(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로 계산한 금액 (=64,687,398원 × 35일/365 × 20%)
(=64,687,398원 × 597일/365 × 15%)